



2019년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현장실습 지침 및 세부사항

성 명

소 속

종 목

실습기관

실습기간 2019. 8. 10 ~ 2019. 10. 20

목 차

1	현장실습운영	1
	□전체일정	1
	□연수시간	1
	□현장실습 과정	1
	□현장실습 출결관리	4
2	현장실습 내용 및 조건	4
	현장실습 계획서	5
	현장실습 변경계획서	6
	현장실습 출근 상황부	7
	현장실습 일지	8
	현장실습 서약서	10
	현장실습 보고서	11
	현장실습 동의서	13
	재직증명서	14
	청렴서약서	15

1 현장실습운영

□전체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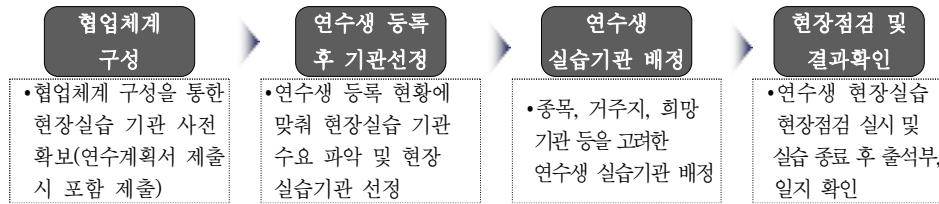
자격구분	연수등록 및 납부	연수		최종합격자 발표
		일반수업	현장실습	
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	7.12 ~ 7.18	7.22~9.22	7.22~10.20	11.8

□연수시간

자격 구분	과정 구분	총 시간	연수과정		
			일반수업	현장실습	현장실습 비율
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	일반	90	60	30	33.3%
	특별	40	40	-	-

□현장실습 과정

○ 추진절차



○ 자격별 현장실습 방향

- 가. 전문/생활스포츠지도사 : 종목별 실습 시행
- 비인기종목, 지역성 및 계절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 부재의 경우 유사종목으로 현장실습 가능(※ 인기·비인기종목은 붙임3. 참고)
- 나. 건강운동관리사 : 장소별(피트니스센터/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), (보건소/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), (병원) 운동프로그램 위주 실습 시행
- 다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: 장애유형별(지적·정서·지체·시각·청각)실습 시행**
- 라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: 지도대상(유/소년) 위주의 실습 시행
- 마. 노인스포츠지도사 : 지도대상(노인) 위주의 실습 시행
- ※ 현장실습 세부내역은 붙임2. 참고
- 현장실습 일정 관리
- 일반수업 과정 완료 후 현장실습 진행하되 현장실습 기관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가능
 - 현장실습 기관 배정 후 개인별 현장실습 계획(현장실습 일자 및 시간, 장소) 사전 확정 및 관리(출결 점검 철저 등)

○ 자격별 현장실습 방향

- 연수기관이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현장실습을 매칭 하는게 원칙
- 현장실습 기관 요건, 지도자 요건을 충족하는 현장실습 장소 선정
 ※ 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수업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
-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연수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 직접 선정 가능 (단, 연수생이 직접 선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종목으로 실습 진행)

<실습기관 직접 선정>

- 가능 사유
 - 비인기종목, 지역성 및 계절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 부재
 - 원거리 연수생으로 현장실습기관 배정 어려움 (원거리는 서울/경기권, 경상권, 충청권, 전라권, 제주권 등 연수기관 지정시의 권역을 벗어난 타 권역을 의미)
- 확인서류 : 현장실습기관 동의서(※붙임11. 양식)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학교의 경우 제외)
- 지역계약 등 필요시 연수원간 현장실습기관 협조 운영 권장
 - * 연수원별 실소요비용을 계산하여 정산처리
- 현직에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현장실습 수행 가능

<현직 현장실습 요건>

- 공통요건
 - 현장실습 기관 요건 및 현장실습 지도자 요건을 충족
 - 현직 요건(연수생) : 현재 해당 실습기관에 근무 하고, 1년이상 현직 지도 경력자
- 자격별 요건
 - 전문스포츠지도사 : 해당종목 소속팀의 감독, 코치에 한함
 - 생활스포츠지도사 : 소속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자에 한함
 - 건강운동관리사 : 운동처방 관련 업무에 한함(병원, 보건소, 피트니스센터 중 1곳만 가능)
 - 유소년·노인·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: 해당 지도대상의 지도자에 한함
- 타 연수생과 동일하게 현장실습 출석부, 실습일지, 현장실습보고서 제출
- 확인서류 : 현장실습기관 동의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사본)-국민건강보험공단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학교의 경우 제외), 재직증명서
- 연수 시작 전 현장실습 계획서를 반드시 연수생이 작성 후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토록하여 철저히 관리 및 보관

<현장실습계획서 관리>

- 공통요건
 - 연수기관의 책임하에 현장실습기관 매칭부터 출결등 전과정을 점검 및 관리 원칙
- 연수기관이 직접 매칭하는 경우
- 연수기관(또는 현장실습기관)이 작성 후 관리 및 보관(연수기관, 현장실습기관)
- 연수생이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(또는 연수생이 직접 선정)
- 직접 작성 후 제출 → 연수기관 관리 및 보관(연수기관, 현장실습기관)

- 연수생 임의로 현장실습 계획 변경 불가 (단 부득히 한 사유로 현장실습 변경시 사전 (현장실습 2일전)에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현장실습 변경계획서 제출 시 조정 가능)

○ 실습지도자 선정

- 실습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지도자 1인당 10명 초과 연수생 배치 금지 (단, 기간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경우는 가능)
- 비인기종목, 신규종목 현장실습 지도자의 경우 1년 이상 실무 지도 경험에 있는 자로 적용 가능(※신규종목은 붙임3. 참고)

○ 실습시간 관리

- 1일 최대 8시간까지 현장실습 인정
- 훈련지도 주관 및 보조시간의 경우 현장실습 지도자의 판단 하에 탄력적 운영 가능
- 현장실습보고서 작성은 최소 2장 이상 제출 시 실습시간 1시간으로 인정 (단,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,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최소 4장 이상 제출 시 실습시간 2시간으로 인정)
- *보고서 분량 : 글자크기 13, 장평 100%, 자간 0%, 행간 160% 준수, 자필 작성 시 동일 분량을 인정(※붙임10. 현장실습보고서 양식 참고)

○ 현장실습 추가 비용

- 종목의 특성 상 현장실습 추가비용 발생하는 경우 연수생 추가 부담가능 (단, 현장실습 시작 전 사전 공지)
- 연수생의 추가부담 의사가 없을 경우 유사종목으로 현장실습 시행

○ 현장실습 시 청렴 의무 준수 안내

- 현장실습지도자 : 청렴서약서 필수 작성(※붙임14. 청렴서약서 양식 참고)
- 연수생 : 현장실습지도자에게 현장실습기간동안 식사대접, 편의제공 등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도록 주의, 현장실습지도자에게 편의제공 등을 요구 받았을 경우는 즉시 연수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

○ 현장실습 제출 서류

- 현장실습일지 및 출석부 (※붙임8. 현장실습 출근 상황부 양식 참고)
- 연수생 현장실습 서약서 사전 필수 작성(※붙임9. 현장실습 서약서 양식 참고)
- *현장실습 시의 부상, 사고 발생에 대비한 개인별 보험 가입 사전 안내
- *현장실습 시 발생한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본인 책임임을 명시
- 현장실습 출결 현장점검 실적 제출 (※붙임8. 현장실습 출결 현장점검 실적 양식 참고)

□ 현장실습 출결관리

- 현장실습 지도자가 출결관리
 - 현장실습 출석부 작성 : 일별 실습시간 기록, 연수생 및 지도자 동시 확인
 - 출결관리 기준은 일반수업 출결관리 기준 적용
 - 연수생은 현장실습 일지 작성 후 실습 지도자 확인
- 현장실습 출결 현장점검 실시
 - 각 연수기관에서 불시 현장 출결점검 후 실적을 제출
 - ① 연수기관 직접 선정 총인원(② ③항목 제외)의 최소 20% 이상(소수점 버림) 점검
 - ② 현직 현장실습 총인원(①, ②항목 제외)의 최소 50% 이상(소수점 버림) 점검
 - ③ 연수생 직접 선정 총인원(①, ②항목 제외)의 최소 30% 이상(소수점 버림) 점검
 - 연수생 현장실습 점검시 현장실습 출근 상황부에 점검일자, 점검내용을 필히 기재
 - * 현장실습 출결 현장점검 실적 제출(모니터링에 반영) : '18.10.19일까지 제출(기일엄수) (단 건강운동관리사 '18.11.20일 까지 제출)
 - 불시 점검 중 연수생 부재시 현장실습 최초 시작일 부터 다시 시행

2. 현장실습 내용 및 조건

구분	현장실습 내용	현장실습 기관
2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유형별 장애인스포츠택지도 실습 - 지적.정서.지체.시각.청각 : 29시간 - 현장실습 보고서 제출 : 1시간 *기관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실습 시간을 조절하되, 최소 2개 이상 장애유형 실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실습 기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가맹 또는 인정단체,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-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공체육시설,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-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, 특수학교(급) * 해당 기관에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중이어야 함. ○ 현장실습 지도자 요건(아래 중 1명 이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스포츠택지도사 자격 소지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선수를 지도한 자(자격증미소지자는 3년 이상) - 생활·전문·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자격 소지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또는 공공체육시설,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,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2년 이상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지도한 자(자격 미소지자는 3년 이상) - 생활·전문·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자격 소지자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지도한 자(자격 미소지자는 3년 이상)

-현장실습 기관과 지도자 요건이 위 내용을 충족해야 함

현장실습 계획서

실습 기관명		연수생	(인)
현장실습 일정	년 월 일 ~ 년 월 일		
지도종목		실습 지도자	(인)
지도시간	시간		

지도 대상	
지도 목표 및 목적	
지도방법 및 활용도구	

지도 계획 및 내용

계획 일정	프로그램 내용	실습장소

* 내용이 많을 경우, 별지 사용

현장실습 변경계획서

실습 기관명		연수생	(인)
현장실습 일정	년 월 일 ~ 년 월 일		
지도종목		실습 지도자	(인)
지도시간	시간		

지도 대상	
지도 목표 및 목적	
지도방법 및 활용도구	
변경사유	

지도 계획 및 내용(변경)

계획 일정	프로그램 내용	실습장소

* 내용이 많을 경우, 별지 사용

청 렬 서 약 서

본인은 국가자격검정·연수업무를 수행하는 대구대학교 2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연수원 임직원(연수원장, 강사, 행정담당자, 현장실습지도자)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업무에 임함에 있어 공명정대할 것
2. 업무 수행에 있어 취득한 체육지도자 연수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
3. 업무 수행에 있어 취득한 체육지도자 연수 관련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
4. 체육지도자 연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지 않을 것
5. 연수생과는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으며, 일체의 금품, 향응, 편의 수수를 금할 것
6. 공적으로 연수생과의 자리를 가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통하여 승인을 얻을 것
7. 연수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, 향응, 편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할 것

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하는 제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19. . .

소속 :

직위 :

성명 : (인)

대구대학교 2급장애인스포츠 연수원장 귀하